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계약기간중 등급변경이나 기간만료로 인한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연장시에는 계약기간란의 기간만 수정 후 상호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다.
-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중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입소자에게 본 센터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단, 등급외자인 경우에는 월중입소시 당일부터 당월말일까지의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수납

할 수 있다.

- ⑥ 입소중 이용료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선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되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되 수가변경이나 등급변경또는 이용자의 자격변경등으로 인해 변경된 비용은 변경계약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익월부터 수납하도록 하되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선유선전화고지후 서면고지) 통보하도록 한다.
-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액)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개인건강악화등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예,입소자의 개인건강악화등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기관진료 및 투약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등)
-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보호대사용, 질환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체 일부의 구속,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

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

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간호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치매등으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 및 공격양상발생가능성이 높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일시적 특별보호조치를 하되 사유를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분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발급확인서 또는 부분간인으로 발부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

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간담회등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의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등의 손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⑭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